#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66 발의연월일: 2024. 6. 24.

발 의 자:김영진·채현일·백혜련

박희승 · 소병훈 · 염태영

박홍배 • 이정문 • 서삼석

이수진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근로감독관은 중대재해 발생 현장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중대재해의 원인을 규명하게 됨.

그런데 중대재해 현장조사 시 근로감독관은 관계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인 사항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실제 중대재해 현장에서는 공단 직원이 중대재해 원인 조사에참여하고 있음.

그러나 중대재해 원인조사가 공단의 수탁 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행법상 공단 소속 직원이 수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중대재해 원인조사와

관련해서는 공단 소속 직원이 현장 출입을 통제받거나 관련 자료 열람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공단에 대한 위탁 업무에 포함하여 원활한 중대재해 원인규명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 후단 및 제165조제2항제10호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을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56조제1항 중 "역학조사"를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역학조사"로 한 다.

제16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56조제1항에 따른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하는 자제165조제2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56조제1항에 따른 중대재해 원인조사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대재해 원인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개시되어 진행되고 있는 중대재해 원인조사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①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	
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	
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u>&lt;후단 신설&gt;</u>	<u>이 경우 고용</u>
	노동부장관은 공단을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6조(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제156조(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① 고용노동부장	및 지도 등) ①
관은 제165조제2항에 따라 공	
단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 소속 직원에게 사	
업장에 출입하여 산업재해 예	
방에 필요한 검사 및 지도 등	
을 하게 하거나, <u>역학조사</u> 를 위	중대재해 원
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인조사 및 역학조사
질문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	
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2조(비밀 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 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 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 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u><신 설></u>

4. ~ 13. (생 략)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7 ① (생 략)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공단 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 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 10. (생 략) <신 설>

11. ~ 41. (생 략)

③ (생 략)

제162소(비밀 유지)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56조제1항에 따른 중대
재해 원인조사를 하는 자
4. ~ 13. (현행과 같음)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b>⊌</b> 
1. ~ 10. (현행과 같음)
10의2. 제56조제1항에 따른 중
대재해 원인조사
11. ~ 41.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